

2024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‘행복씨앗통장’ 안내문

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(행복씨앗통장)이 시행되오니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기간 : 2024. 4. 3.(수) ~ 2023. 4. 17.(수) ※ 선착순 아님
- 가입대상 : 발달장애인 중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(해당출생일 1985. 1. 1. ~ 2008. 12. 31.)
- 접수(신청)방법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
대상자 선정	▶ 남동구 선정인원 : 17명 ▶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선발 (선착순 아님)																	
신청자격	▶ 공고일(2024. 3. 27.)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▶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▶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(신청인 가구의 소득, 재산(부동산,차량) 등 포함하여 소득조사) 【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(원) 】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1인 가구</th><th>2인 가구</th><th>3인 가구</th><th>4인 가구</th><th>5인 가구</th><th>6인 가구</th><th>7인 가구</th></tr><tr><td>중위소득 100%</td><td>2,228,445</td><td>3,682,609</td><td>4,714,657</td><td>5,729,913</td><td>6,695,735</td><td>7,618,369</td><td>8,514,994</td></tr></table>		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중위소득 100%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
	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									
	중위소득 100%	2,228,445	3,682,609	4,714,657	5,729,913	6,695,735	7,618,369	8,514,994										
▶ 제외대상 -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주거·교육수급자는 가능) -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 또는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- 신청자 본인 및 해당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,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▶ 저축기간 : 36개월 ▶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맞춤지원 - 본인저축액 15만원 + 지원금 15만원 - 3년 만기시 적립금 1,080만원 + 이자																	
적립 및 해지요건	▶ 중도환수 해지 : 본인적립금 + 본인 이자만 지급 (市적립금 미지급) - 본인해지 희망, 연속 5회 미저축, 총 7회 미저축, 관련 교육 등 무단 불참 ▶ 특별중도 해지: 본인적립금 + 市 적립금 + 이자지급 (사유 발생 시점까지) - 가입자 사망, 타 시도 전출																	
사용용도	▶ 발달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 등을 위한 자립자금 마련 - 주택임차비,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비, 기술훈련비, 창업자금 등 ▶ 발달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- 의료비, 치료비, 보조기기 구입 대여료 등																	

청년 발달 장애인 「행복씨앗통장」 참여 자가 진단표

☐ 아래 필수가입요건의 모든 항목에 “예” 로 답할 경우에만 「행복씨앗통장」 신청 가능합니다.

점 검 내 용	결 과
1.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까?	☐ 예 ☐ 아니요
2. 공고일 기준, 귀하의 연령이 16세 이상 39세 이하(1985~2008년 출생)입니까?	☐ 예 ☐ 아니요
3.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입니까?	☐ 예 ☐ 아니요
4-1.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를 기준으로 가구원소득 기준이 초과하지는 않습니까? 4-2. 신청시 가구 기준중위 소득심사는 접수·선정기관에서 국가전산정보 등을 토대로 정확하게 심사합니다. 본인이 판단한 것과 다를 수 있음에 동의하십니까?	☐ 예 ☐ 아니요
5. 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)는 신청 제외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?	☐ 예 ☐ 아니요
6. 신청자는 행복씨앗통장 사업 지원 이력이 중복수급 여부 확인을 위해 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? ※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,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, 가입 불가, 가입 시 추후 환수조치 (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희망저축계좌, 청년내일저축계좌, 디딤씨앗통장, 내일채움공제 등)	☐ 예 ☐ 아니요
8.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중도환수 해지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? ※ 본인저축액(+이자)만 지급, 市 적립금 미지급 - 본인 요청, 연속 5회(총 7회 미저축), 교육 무단 불참 등	☐ 예 ☐ 아니요
9.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,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됨을 알고 계십니까?	☐ 예 ☐ 아니요

□ 신청서류

구분		내용
기본제출서류 (신청자)	①본인 신분증 사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복지카드 등 - 대리인 접수 시 (대리인 신분증)
	②가입신청서	-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
	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	
	④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	- 작성대상 : 본인(배우자, 자녀), 부모 ※ 부모 및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
	⑤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 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각 증빙서류	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해당자에 한함 (본인지참)	⑥전·월세 임대차 계약서 (사용대차확인서)	- (초본상 본인·부모 거주지) 임대인에게 발급 - 무상임대의 경우 " 사용대차 확인서 " 제출 ※ <u>본인 또는 부모 소유의 자가에</u>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, 제출하지 않음 단, <u>본인은 전세 부모는 자기인</u> 경우,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징구
	⑦부채증명원	최근 2개월 이내 제1,2 금융권 발급 (수수료 본인 부담) ※신청마감일까지 미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
	⑧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·기피 사유서	1촌의 직계 혈족(부모, 자녀)

○ 문 의 : 주거지 관할 동 장애인복지 담당자
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(☎032-453-2573)